

# 06

## 1884년 ‘의제 개혁’에 대한 정치적 독해

—문명사적 전환기의 현실정치 공간과 한일관계의 한 측면

### ■ 강상규

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전임강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박사

### 주요 논저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2007)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2008)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과 문명사적 전환기의 위기」(도쿄  
대학 박사학위 논문, 2005)

### Contents

---

- 1 문제의식의 소재
- 2 의복 문제의 대두와 일본
- 3 1884년 의제 개혁의 전개와 현실정치 공간
- 4 의제 개혁의 주체와 국왕의 역할
- 5 맺음말에 대신하여

1884년 여름, 조선 정계는 의복(衣服)제도의 개혁을 둘러싸고 두 달 이상의 뜨거운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 사건은 19세기 후반이라는 거대한 전환기, 격동의 시대에 나타난 수많은 논쟁 가운데 가장 격렬하면서도 집요하게 진행되었던 사건 중 하나이지만,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1884년의 의제 개혁이 이루어진 경위는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어떠한 찬반 논란이 있었으며 어떠한 정치적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전개되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문명사적 전환기’의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의제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격렬한 논란 과정은 ‘문명의 충돌이란 사실상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의제 개혁이 그토록 격렬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데에는 17세기 명청교체라는 문명질서의 전복이 이루어진 이후 조선이 일상 속에서 중화문명의 정수(精髓)를 유일하게 계승하고 있으며 조선이 문명국가임을 가장 명증하게 보여주는 근간이 바로 다름 아닌 조선의 의관문물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의제 개혁의 문제는 거대한 혼돈의 시점에서 조선의 정체성과 신분질서를 뒤흔드는 문제라는 강렬한 위기감을 드러내게 하였고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확고히 믿어 온 ‘문명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은 패러다임이 극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유한 문명기준’이 오히려 ‘야만’과 ‘정체(停滯)’됨의 표상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보면 ‘문명기준의 역전’이라고 불러야 할 사태의 전개였고, 이러한 거대한 전환기의 와중에서 나타난 정치세력들의 끊임없는 엿박자로 조선의 운명은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

## 주제어

문명기준의 역전, 의복제도 개혁, 전환기, 한일관계, 고종, 정치적 논쟁, 엿박자

## 1. 문제의식의 소재

1884년 여름 조선 정계는 의복(衣服) 혹은 이른바 복식(服飾)제도 개혁—이하 의제(衣制) 개혁으로 약칭—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황현(1855~1910)의 『매천야록』은 갑신년의 의제 개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884년—필자) 6월에 의제를 개혁하여 공복(公服)과 사복(私服)에 대해, 귀하고 천하고를 불문하고 신식 옷을 입으라는 명을 반포하였다. [……] 윤 5월에 정부지침(節田)을 정하여 공복은 (기왕의) 홍단령(紅團領)으로 된 소매 넓은 옷을 입지 말고, 모든 관리가 흑단령(黑團領)으로 된 소매 좁은 옷을 입도록 하였다. 사복으로는 도포(道袍)와 직령(直領), 창의(幘衣) 등과 같은 소매 넓은 것을 입지 말도록 하고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소매가 좁은 두루마기 옷(周衣)을 입도록 하였으며, 관직에 있는 사람은 전복(戰服)을 (다른 옷 위에) 걸쳐 입으라고 하였다. 기타 조항이 세밀하게 되어있으나 대체로 넓은 소매를 금하라는 내용으로서 여기에 번잡하고 자질구레한 기

복은 생략한다. 이일로 인해 나라 안은 발각 뒤집히고 사람들은 이에 불복(不服)하였다.<sup>1)</sup>

1884년 의제 개혁은 조선 정계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여 두 달 이상 격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팽팽히 전개된 갑신년의 의제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관견(管見)에 의하면, 19세기 후반이라는 거대한 전환기, 격동의 시대에 『승정원일기』나 『고종실록』 등의 관찬자료에 나타나는 수많은 논쟁 가운데 가장 격렬하면서도 집요하게 진행되었던 사건 중 하나였다. 하지만 황현의 지적대로라면, 이처럼 “나라 안이 발각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의복의 변천 과정을 다루는 복식사(服飾史) 분야의 연구를 제외하고는<sup>2)</sup> 의제 개혁이라는 ‘문제적 사건’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서 이 시기를 다루는 대표적인 개론서에 해당하는 이광린의 『한국사강좌 V: 근대편』(서울: 일조각, 1997)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정치사 연구에서 이 사건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1884년 진행된 의제 개혁과 그를 둘러싼 논란의 과정이 복식사 분야에 서만 의미를 가질 뿐 이 시대의 정치사를 거시적인 차원에서나 미시적인 차원에서 조명하는 데 무한해도 좋을 만한 것이라면 이러한 논의의 공백이

---

1) 황현 저, 김준 역, 『매천야록』(교문사, 1994) p.153 인용 부분은 번역문의 오역을 정정한 것임.  
2) 갑신년 의제 개혁을 다룬 복식사 분야의 연구 중에서 본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연구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은정·김용서·안명숙, “조선조 고종대의 의제 개혁에 따른 변화”, 『논문집』 7(광주대학교 민족문화예술연구소, 1998); 이경미, “대한제국의 서구식 대례복 패러다임”(2008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이경미, “갑신제의 개혁이전 일본 파견 수신사와 조사사찰단의 복식 및 복식관”, 『한국의류학회지』 Vol.33, No.1(2009); 이경미, “19세기 말 서구식 대례복 제도에 대한 조선의 최초 시각: 서계접수문제를 통해”, 『한국의류학회지』 Vol.33, No.5(2009).

문제될 리 없다. 하지만 의제 개혁으로 인해 황헌의 지적처럼 '나라 안이 발각 뒤집히고 사람들이 이에 불복하였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의제 개혁은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조선에서 개혁 개방정책이 어렵게 진행되어 가던 시기였다. 얼마 후에 발생하여 이후 조선의 정치적 운명을 뒤흔든 갑신정변이라는 정치적 사건과 시기적으로 이어지는 19세기 조선정치사에서 가장 민감한 시점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은 이 시대 정치사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연구는 1884년의 의제 개혁이 이루어진 경위는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어떠한 찬반 논란이 있었으며 어떠한 정치적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전개되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19세기라는 시대 상황에서 의복제도 문제가 대두되는 경위를 우선 검토하였다. 의복 문제의 대두가 특히 '일본'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조일 양국 관계를 조망하려고 할 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시기 의복제도의 개혁 문제가 왜 당대의 조선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의제 개혁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진행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제 개혁의 추진논리와 반대논리가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공방을 거듭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19세기 후반 조선 정치 지형의 단면과 아울러 다른 입장을 갖고 있던 정치세력들의 논리와 행동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4장에서는 의제

개혁의 추진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일차자료를 고찰해보고, 개혁 과정에서 국왕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분에서는 이제까지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1884년 의제 개혁의 정치적 사상적 의미를 거시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의복 문제의 대두와 일본

1876년 정월 조선과 일본 양국대표가 강화도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하고 있을 때, 면암 최익현(1833~1906)은 ‘도끼를 가지고 궁궐에 엎드려 화의(和議)를 배척한다’는 제목의 유명한 상소를 국왕에게 올린다. 상소문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실려 있다.

전하의 뜻은 “저들은 왜인(倭人)이고 서양 오랑캐(洋胡)가 아니며 그 말하는 것이 옛날 호의를 닦자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면, 왜와 더불어 옛날 호의를 닦는 것이 또한 어찌 도의에 해롭겠는가?”라고 하시지만, 신의 견해는 크게 그렇지 않음이 있습니다. 설사 저들이 참으로 왜인이고 서양 오랑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왜인들의 실정과 자취가 예전과 지금이 현저하게 달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의 왜인들은 이웃나라였으나 지금의 왜인들은 도적떼(寇賊)이니, 이웃나라와는 강화해도 도적떼와는 강화할 수 없습니다. 왜인들이 도적떼인 것을 어떻게 분명히 아는가 하면, 그들이 서양 도적(洋賊)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이요, 그들이 서양 도적의 앞잡이가 된 것을 또한 어떻게 분명히 볼 수 있는가 하면, 왜(倭)와 양(洋) 두 무리들이 마음이 서로 통하여, 중국에서 제멋대로 행동한지 이미 오래기 때문입

니다. [……] 지금 온 왜인들이 서양 옷을 입었고 서양 대포를 사용하며 서양 배를 탔으니, 이는 모두 서양과 왜가 하나인 분명한 증거입니다.<sup>3)</sup>

이 내용을 환언하면, ‘일본과 서양은 서로 다른 존재이며(倭洋分離), 따라서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다지는 것은 예전의 우의를 회복하는 것(舊交回復)’이라는 국왕의 견해는 크게 잘못되었으며, ‘일본은 이미 서양 오랑캐의 앞잡이로서 서양 오랑캐와 다를 바 없는 존재’, 즉 ‘왜와 양은 하나(倭洋一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 중의 하나가 일본인들이 다름 아닌 서양 오랑캐와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소의 다른 곳에서 그는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서양 도적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과 한번 강화를 맺게 되면, “장차 집집마다 사학(邪學=천주교)을 믿게 되어, 아들이 그 아버를 아비로 여기지 않고 신하가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 (예의를 표상하는) 의상(衣裳)은 시궁창에 빠지고 인류는 변하여 금수(禽獸)가 될 것이니, (일본과의) 강화는 난리와 멸망을 가져오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격렬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다.<sup>4)</sup> 뿐만 아니라 “중국 온 땅덩이가 요순과 문무의 옛 강토였는데, 2백 년 이래로 머리를 깎고 의관(衣冠)을 없애어 오랑캐로 변화했으니, 무릇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가 낙심하며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sup>5)</sup>라고 언급한다. 이 상소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최익현이 의관문물을 금수 혹은 오랑캐의 세계와 자신이 속한 세계를 구별 짓는 하나의 중요한 준거의

3) 최익현, “持斧伏闕斥和議疏”, 『국역 면암집』(술, 1977), pp. 131~132.

4) 앞의 책, p. 127.

5) 앞의 책, pp. 130~131.

틀로 삼아, 일본과 서양을 하나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명청교체 이후 중국에서 사라진 중화문명의 정수를 조선이 간직하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서구식 복장 착용이 문제가 된 것은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복식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측이 서계의 형식을 바꾸면서 양국 간의 갈등관계가 팽팽히 진행되던 가운데 이미 불거져 나오고 있었다. 1873년 11월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고 1874년 6월 고종이 일본 측의 서계를 접수하기로 방침을 수정하였으나, 일본 측의 서구식 예복 착용 주장 등이 다시 새로운 외교적 걸림돌로 등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양국 간의 교섭이 중단되는 사태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sup>6)</sup>

당시 양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처럼 복식 문제가 양국 간의 교섭 과정에서 표면으로 부상한 것은 어느 정도 예고된 사태였다. 왜냐하면 대원군의 지휘하에 조선은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라는 ‘서양 오랑캐’의 군대와 이미 충돌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과 같은 사건을 통해 서양의 야만성에 대한 확신이 전국에 팽배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적화비(斥和碑)가 세워져 있던 반면, 일본의 메이지 신정부의 ‘개국화친(開國和親)’으로 국정운영 방침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문명 개화’와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복식체계를 서구식으로 바꾼 상태였기 때문이다.<sup>7)</sup>

---

6) 이에 관해서는, 이경미, “19세기 말 서구식 대례복 제도에 대한 조선의 최초 시각: 서계접수문제를 통해”, 『한국의류학회지』 Vol.33, No.5(2009)를 참고할 수 있다.

7) 일본의 의복제도 개혁은 막부 말기인 1862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막부는 복식제도를 개혁하여 무사의 복장을 활동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복식을 개정하는 데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이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강화도조약 이후 수신사(修信使)의 자격으로 직접 일본 땅을 처음 밟은 김기수(1832~1894)는 달라진 일본 복식을 비롯하여 의복 문제에 대한 견해를 자신의 견문기의 여러 곳에 남기고 있는데, 당시 조선 지식인의 의복제도에 대한 인식을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주목된다. 그는 국왕에게 올린 귀국보고서(見聞別單)에서 메이지천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 개혁에 관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저들의 이른바 황제(=明治天皇)는 나이가 지금 바야흐로 이십 오세인데, [……] 정력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고 매우 부지런하여 관백(關白)도 폐지해야 할 것 같으면 관백도 가히 폐지하고, 변경해야 할 것 같으면 제도도 변경했습니다. 다리에 딱 붙은 바지와 군대를 운용하는 데 이로울 것 같으면 비록 양인(洋人)의 옷일지라도 갑자기 옛 것을 버리고 이를 따라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감히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었으며 옛날의 관백도 지금 봉록만 받고 강호(江戶=현재의 東京)에 있으면서 또한 감히 원망하는 기색과 뒷사람을 엿보는 마음은 없다고 합니다. [……] 그가 총명하고 과단성이 있어 인재를 가려 임용하는 것은 취할 수 있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sup>8)</sup>

수신사 김기수가 메이지천황에 대해 짧게 보고하는 가운데 서양의

---

존재하였기 때문에 일본식 전통복장과 서양식 복장이 혼용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메이지 신정부는 1871년에는 복식제도 개혁의 필요를 설명하는 이유를 천황의 이름으로 내리고, 1872년 11월에는 서구식 대례복체계를 채용한 ‘문관대례복’ 법령을 제정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키 고지(多木浩二), 박삼현 역, 『천황의 초상』(서울: 소명출판, 2007) 등을 참조. 일본의 의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경미, “대한제국의 서구식 대례복 패러다임”(2008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에 상세하다.

8) 김기수, 『日東記游』(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 1962), pp.269~270.

복식체계를 수용한 일본의 의제 개혁에 대해 이처럼 특별히 강조하여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일본의 복식 문제가 조선 측에 초미의 관심사였을 뿐 아니라 의제 개혁이 좋은 싫든 수신사의 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수신사 김기수의 눈에 비친 메이지 일본은 불철주야 부국강병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으며, 그 수준은 중국을 넘어설 정도로 경이로운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기수는 한편으로는 그토록 감탄하면서도 경서를 외면한 채 실용서적만을 탐독하고 부국강병에 매달리는 일본이 미래의 장구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심을 품고 있었다.<sup>9)</sup> 따라서 그가 국왕에게 올린 귀국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교묘하지 않은 기술이 없고 정교하지 않은 기예가 없어[……] 의견상으로는 이보다 더 부강할 수 없으나, 곰곰이 그 기세를 생각해보면(부국강병책에 입각한 일본의 방책이—필자) 장구한 계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sup>10)</sup>

따라서 달라진 일본 복식에 대한 김기수의 견해 역시 무척 냉담한 것이었다. 에킨대 일본의 외무성관리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가 ‘일본이 최근 제작한 의복이 필요에 따라 모두 서양식으로 변통한 경우’라고 말하면서 조선 의복의 변화 가능성을 묻자, 김기수는 의기양양한 어조로 ‘우리나라의 의복은 건국 이후 명(明)의 제도를 따라 만들어 지금까지 500년 동안에 상하귀천을 불문하고 이를 따르고 있으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9)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서울: 논형, 2008), pp.31~33 참조.

10) 김기수, 앞의 책, p.273.

잘라 말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견해는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와 문답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더욱 강력하게 피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칙은 선왕(先王)의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선왕의 옷이 아니면 입지 아니하여, 이것을 한결같이 전수한 것이 벌써 5백 년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죽고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이하고 과도한 기교를 만들어 남과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공도 또한 대체로 알 것입니다.[今雖死耳亡耳 不願爲奇技淫巧 與人爭長 公亦庶幾知之矣]<sup>12)</sup>

이는 ‘예의지방(禮義之邦)’인 조선 문명의 단면을 표상하는 의복제도에 대한 강한 자부심의 표현인 동시에 일본의 의제 개혁이나 서양의 복식체계에 대하여 조선에서 수용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80년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김홍집(1842~1896)의 경우나 1881년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된 대규모 조사시찰단의 경우에도, 1882년 임오군란 수습을 위해 일본에 파견된 3차 수신사 일행에게도, 1883년 미국 등지로 떠난 보빙사 일행에게도 의복 문제는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sup>13)</sup> 김홍집의 귀국보고서나 박정양(1841~1904)을 비롯한 다른 조사시

11) 김기수, 앞의 책, p.120.

12) 김기수, 앞의 책, p.125.

13) 이 시기 일본을 다녀 온 수신사들의 의복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는 이경미, “갑신 의제 개혁 이전 일본 파견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의 복식 및 복식관”, 『한국의류학회지』 Vol.33, No.1(2009)를 참고할 수 있다.

찰단의 보고 중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렵을 전후해서 나타난 위정척사적 관점에 입각한 반대상소 등에도 의복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표명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4)</sup>

한편 이 무렵 중국 측 신문 「신보(申報)」에서는 조선의 의복제도와 관련된 기사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신고 있다.

고려(=조선) 사신들이 일본 무관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학교 내의 각종 수련기구들을 보고는 한 번 사용해 보고 싶었으나 넓은 도포와 큰 소매 복장으로 매우 불편하였다. 학당 교관이 이렇게 불편한데 왜 고치지 않느냐고 하며 시범을 보여주자, 고려 관원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나서 “의복은 우리 국가의 제도이니 어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요”라고 말하였다. 무술 시범을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의복이 불편하다며 불쾌해 하면서 그곳을 떠나버렸다.

일본에서 서양인들이 말타기 경기를 벌였는데 둘째 날, 일황(日皇)이 친히 관람을 왔다. 고려(조선) 사신들도 도착하였는데 규정상 우승자에게는 일본 정부에서 상금으로 은냥을 준다고 하자 고려 사신들도 마음이 동하여 경기에 참가하려 하였다. 서양인이 허가하여 고려 사신도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하였지만, 큰 소매와 큰 모자가 바람을 가로막아 반도 못되어 뒤로 처져 경기를 그만두고 말았다.<sup>15)</sup>

---

14)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홍시중의 상소, 홍재학(1848~1881)의 만언소(萬言疏), 백낙관(1846~1883)의 척왜소(斥倭疏)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은 『승정원일기』 1881년 3월 23일자, 1881년 7월 6일자, 1882년 5월 4일자에 수록되어있다.

15) 「申報」, “高使近聞”(1881.12.28), 김성남, “「申報」를 통해 본 1880년대의 조선 사회”, 『근대전

### 3. 1884년 의제 개혁의 전개와 현실정치 공간

1884년 윤 5월 19일 국왕 고종은“친군위(親軍衛)는 복장이 간편하고 훈련하는 것이 정돈되어 있어서 시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 알맞다. 각 군영(軍營)도 이와 차이가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지금부터 복장과 연습하는 방법을 일체 친군위(親軍衛)의 군사규정대로 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sup>16)</sup> 요컨대 군복을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지금부터 조정에 적(籍)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은 늘 흑단령을 착용하고, 크고 작은 조회의식(朝儀)에 나올 때나 대궐 안팎에서 공무를 볼 때 흉배(胸背)를 붙여서 문관과 무관의 품계를 구별하도록 하고, 단령(團領)제도에서 반령착수(盤領窄袖=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은 포) 역시 왕조 초기의 옷도안을 따르도록 하라”는 하교를 내리게 되는데, 이는 요컨대 관복(官服)을 변통하겠다는 내용이였다.<sup>17)</sup> 그리고 다음날에는 의제 개혁을 사복에 까지 확대한다는 지시를 내린다.

의복제도에는 변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통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조례(朝禮)와 제례(祭禮) 및 상례(喪禮) 때에 입는 옷은 모두 선대 임금들이 남겨놓은 제도인 만큼 변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수시로 편리하게 만들어 입는 사복(私服)과 같은 것은 편한 대로 변통할 수 있는 것이다.

---

환기 동아시아 삼국과 한국: 근대인식과 정책』(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p.53에서 재인용. 「申報」는 중국의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신문으로서 1862년 증문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여, 1872년 5월부터 정식 일간지로 간행되었다. 신보의 1, 2면에는 당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조선과 일본에 관한 소식이 상당수 실렸다.

16) 『고종실록』 21年 閏5月 19日, 『승정원일기』 同日條.

17) 『고종실록』 21年 閏5月 24日, 『승정원일기』 同日條.

[표 6-1] 의제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상황 일람

날짜	행위 주체의 관직과 성명, 정치적 의사표현 방식	개혁 찬반 여부	국왕의 대응 (설득/처벌/기타)
윤 5월 19일	국왕, 군복 간소화 지시		
윤 5월 24일	국왕, 관복 간소화 지시		
윤 5월 25일	국왕, 사복 간소화를 위한 지침 마련 지시		
윤 5월 26일	예조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반응	반대	설득
윤 5월 27일	영중추부사 홍순목, 영의정 김병국, 우의정 김병덕 등 전현직 대신의 첫 번째 연명차자	반대	설득
윤 5월 28일	영중추부사 홍순목, 영의정 김병국, 우의정 김병덕 등 전현직 대신의 두 번째 연명차자	반대	설득
	예조판서 이인명의 상소	반대	처벌 (6월 3일 용서)
윤 5월 29일	대사간 윤구영, 집의 윤상익, 장령 이원기·이명원, 지평 김진우·김홍규, 헌남 김중식 등 양사(兩司)의 연명차자	반대	처벌
	응교 유진옥, 교리 김재용·서의순, 부교리 이범조·신석연, 수찬 오유선·홍병일, 부수찬 김학선 등 홍문관의 연명차자	반대	양해 당부
	전언 이수홍·홍우정의 상소	반대	처벌
6월 1일	영중추부사 홍순목, 영의정 김병국, 우의정 김병덕 등 전현직 대신의 세 번째 연명차자	반대	설득
6월 2일	한성순보(漢城旬報), 의제 개혁의 공방 과정 1차 기사화	찬성	
6월 2일	전현직 대신이 처벌을 청함	저항	설득
6월 3일	예조에서 국왕의 지침에 따라 사복제도변동절목 정함		전국 시행 지시
	봉조하 이유원의 상소	반대	설득
	응교 유진옥, 교리 김재용·서위순, 부교리 이범조·신석연, 수찬 오유선·홍병일, 부수찬 김학선·이재순 등의 연명 상소	반대	
6월 4일	영의정 김병국의 차자, 사임 요청	반대	설득
	성균관 유생 심노정 등의 상소	반대	양해 당부
6월 5일	국왕, 홍순목과 김병덕에 대한 처벌 지시		
	성균관 유생 남두희 등의 상소	반대	처벌
6월 6일	영의정 김병국이 업무 거부	반대	설득(1차 유시)
	예조판서 이인명의 두 번째 상소	반대	처벌
	승문원 부정자 안효석의 상소	반대	양해 당부
	부호군 김교환의 상소	찬성	칭찬
	승문원 부정자 허석의 상소	찬성	칭찬
6월 7일	국왕, 영의정 김병국 설득(2차 유시)		
6월 8일	국왕, 영의정 김병국 설득(3차 유시), 다시 처벌지시		
	부호군 박제교의 상소	반대	양해 당부
	부사과 조상학의 상소	찬성	칭찬
	남원부 유학 이홍우	반대	양해 당부
6월 9일	국왕, 영의정 김병국 용서 후 재설득(1차 유시)		
6월 10일	국왕, 영의정 김병국 재설득(2차, 3차 유시)		
	부호군 김영주의 상소	찬성	칭찬
6월 11일	한성순보(漢城旬報), 의제 개혁의 공방 과정 2차 기사화	찬성	

6월 12일	영의정 김병국의 상소 영의정 김병국 처벌을 청함	반대 저항	설득
6월 13일	봉조하 이유원의 상소	반대	설득
6월 14일	국왕, 영의정 김병국 재설득(4차유시)		
6월 15일	국왕, 실시구시에 입각한 국정운영 입장 천명 판중추부사 송근수의 상소	반대	설득
6월 17일	국왕, 영의정 김병국 재설득(5차유시)		
	청풍 유학 김상봉의 상소	찬성	처벌
	지방 유생 서상숙의 상소	반대	양해 당부
	온양 유생 전달홍의 상소	반대	
	부호군 지건룡의 상소	찬성	
6월 20일	이인환의 상소	찬성	
	경상도 진사 송은성의 상소	찬성	
6월 21일	국왕, 전복(戰服) 명칭을 답호로 명칭 변경	찬성	
6월 21일	국왕, 영의정 김병국과 대화		대화 설득
6월 23일	한성순보(漢城旬報), 의제 개혁의 공방 과정 3차 기사화 응교 김재용, 교리 조병익·윤태홍, 부교리 장석유·서상우, 수찬 정인홍, 부수찬 이익덕·이헌경 등 홍문관의 연명차자 수찬 김복성의 상소	찬성 반대	 양해 당부 양해 당부
6월 25일	찬선 송병선의 상소	반대	설득
6월 30일	경연관 김낙현의 상소	반대	설득
7월 1일	한성순보(漢城旬報), 의제 개혁의 공방 과정 4차 기사화	찬성	
7월 2일	국왕, 홍순목과 김병덕 재등용 지시, 파면시킨 대간(臺諫) 모두 용서		
7월 3일	판중추부사 송근수의 상소	반대	설득
7월 9일	국왕, 홍순목과 김병덕에게 유시		
	전 응교 송도순의 상소	반대	양해 당부
	부사와 박기명의 상소	찬성	칭찬
7월 11일	부사와 권봉희의 상소	찬성	칭찬
7월 11일	한성순보(漢城旬報), 의제 개혁의 공방 과정 5차 기사화	찬성	
7월 16일	국왕, 홍순목과 김병덕에게 재차 유시		설득
7월 21일	국왕, 한성순보(漢城旬報)에 의제 개혁 관련 상소에 대해 기사화 중지 지시		
7월 22일	서연관 박성양의 상소	반대	설득
7월 24일	영중추부사 홍순목의 상소	반대	설득
	경상도 안의 유학 전학순의 상소	반대	양해 당부
	김교환의 상소	찬성	
	박동수의 상소	찬성	
7월 27일	오감의 상소	반대	
	경연관 김낙현의 상소	반대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참조. 19)

우리나라의 사복 가운데 도포나 직령, 창의, 중의(中衣) 같은 옷은 겹겹으로 입고 소매가 넓어서 일하는데 불편하고 옛날 것과 비교해도 많은 차이가 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조금 변통하여 소매가 좁은 옷[窄袖衣]에 전복을 입고 사대(絲帶)를 착용하여 간편한 대로 따르는 것으로 규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니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을 짜서 들여보내도록 하라.<sup>18)</sup>

이 지시가 내려진 후 반대여론이 비등하게 되면서 조선 정계는 두 달 이상 격렬한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 의제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매우 격렬하면서도 지루하게 거듭되었다. 따라서 개혁 추진의 논리와 반대논리를 전체적인 상황 전개위에서 이해하기 위해, 상소나 단체행동 등을 통해 국왕에게 정치적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경우와 이에 대한 국왕의 대응방식 등을 가능한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것이 [표 6-1]이다.

군복, 관복, 사복을 실용적으로 간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후에 이 문제를 관할하는 예조(禮曹)는 ‘이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므로 지금 새로운 정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묘당(=의정부)과 함께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올렸다. 이에 대해 국왕은 해당부서로서 처리해야 할 일을 딱 데로 미루지 말고 속히 거행하라고 지시한다.<sup>20)</sup> 이에 대해 전현직 대신들이 연명으로 차자(劄子=약식상소)

18) 『고종실록』 21年 閏5月 25日, 『승정원일기』 同日條. 여기에 나온 복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권오창, 『조선시대 우리옷』(서울: 현암사, 2004); 김명호, 『환재 박규수연구』(과주: 창비, 2008) 2부 1장; 유송옥, 『韓國服飾史』(서울: 수학사, 199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9) 여기 소개한 상소는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는 경우와 『승정원일기』에만 실려 있는 경우로 나뉜다. 그리고 양쪽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종실록』에는 상소 내용이 생략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할 경우, 『승정원일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20) 『승정원일기』 고종 21年 閏5月 26日.



를 올리고,

우리 왕조의 공복과 사복은 모두 명나라의 제도를 따라 한 나라의 제도로 된 만큼 오늘에 와서 변통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오로지 간편한 것만 가지고 말한다면 문물제도와 위엄을 나타내고자 한 취지를 어디에서 실증할 수 있으며 또한 어찌 중국의 문물을 쓰는 도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얼마 전 병정들의 복장을 다른 제도로 변통한 것만도 이미 놀라운 일인데 이제 관리들과 백성들의 복장을 모조리 하루아침에 고친다면 이것이 어찌 후세의 귀감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지시를 철회하고 옛 제도를 보존하라며 반발하고 나서게 된다.  
그러자 국왕은

지금 나라의 형편이 문학만 숭상하여 문약(文弱)하고 군사제도는 말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은 구차하게 편안히 지낼 것만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기 싫어하고 있다. 그래서 위의 지시가 아래에서 시행되지 않고 아래의 사정이 위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와서 어떻게 옛 습관에 젖어 나태하게 지내면서 진흥시킬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지시를 따라줄 것을 촉구했다.<sup>21)</sup> 이에 대해 대신들은 연명으로 다시 차자를 올리고,

---

21) 앞의 책, 고종 21年 閏5月 27日.

옛 법을 따르면서 고질적인 폐단인 사치 풍조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진실로 민심은 쉽게 동요하고 진정시키기 어려우며 물정(物情)은 옛것을 편안히 여기고 새것을 싫어합니다. 마땅히 고쳐야 할 일도 지금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하물며 고쳐야 할 일이 아닌 것에 급급해하며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며 지시를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왕은

수년 이래로 나라의 운수가 대단히 어려움이 많고 변란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으니 평상시의 무사한 시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군사들의 복장을 번잡한 것을 없애 간편하게 하자고 한 것이니 여기에 나의 깊은 의도가 있다. 이제 만약에 옛 것을 그냥 고집하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크게 변혁하고 변통하는 뜻이라고 하겠는가? 역대 임금들도 대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미 있던 것을 변통하여 매번 시세에 맞게 맞추어 가지 않았는가. 경들이 이해하라.

라고 대응한다. 그러자 예조판서 이인명이 상소를 올려

예조가 거행하는 것은 단지 규례를 상고하여 이미 행한 일을 오로지 따라하는 것이며 규례를 새로 만드는 문제는 감히 스스로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 의정부의 대신들이 방금 의복 변통의 일로 차자를 올렸으니, 부디 이 문제에 있어서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번 더 숙고하고 널리 의견을 들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국왕이 이인명의 처벌을 명하며 강경하게 나서자, 사헌부와 사간원 양사(兩司)의 연명차자가 다시 뒤를 이었다.

전교(傳敎)를 보니 공복과 사복 제도를 변경시킬 것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데, 뒤이어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황급해하며 뜯소문을 진정시키기 어렵게 되니 참으로 지극히 근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상이란 신체의 표식입니다. 당우삼대(唐虞三代)로부터 문장을 만들고 제도를 알맞게 제정하였으니, 경전(經典)과 도식(圖式)에 당연히 근거가 분명하여 고찰할 수 있는데, 순전히 검은 빛깔의 옷이라든가 반령착수(盤領窄袖) 제도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 역대 임금들이 계승해 내려오면서 문물제도를 크게 갖추어 놓음으로써 의복제도가 찬연히 완비되었으니, 옷자락이 크고 띠가 넓은 선비들의 옷차림은 오직 예의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만약 이 옛 제도를 보자고 하게 되면 옹당 모두 와서 본받아가야 할 것인데 이제 와서 하필 변경시킬 것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깊이 생각하시고 멀리 내다보시어 이번에 내리신 지시를 도로 철회하고 나라의 제도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국왕은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연명차자에 참여한 이들을 모두 파면시키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섰다.<sup>22)</sup> 그러자 이번에는 홍문관 관리 등의 연명차자와 상소가 이어졌다. ‘이번에 의복제도의 변경은 전하께서 옛 것을 참고하고 오늘 일을 헤아려 사정의 변화에 따라 시세에 맞게 고치려

22) 앞의 책, 고종 21年 閏5月 28日.

한 것이다. 하지만 사치를 억제하려고 변경하는 것이라면 검소하게 할 방법이 달리 왜 없을 것이며, 번거로운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면 어찌 간편하게 할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것이었다. 같은 날 이수홍 등이 ‘우리나라의 의복은 실로 알맞도록 제정된 것이어서 천하가 흠모하는 바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번잡하다고 제거하며, 간편하게 한다면서 새롭게 하여 백성들의 의심을 사는 것인가. 공복과 사복은 명나라가 남긴 제도이며, 우리 왕조가 만들어 놓은 법으로서 만대에 이르도록 변경할 수 없는 법이다’라며 지시를 철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국왕은 이들의 파직을 지시하였다.<sup>23)</sup>

이처럼 국왕이 강경하게 나서자 전현직 대신들은 세 번째 차자를 통해,

우리나라는 기자 때부터 이미 중국의 의관을 착용하여 왔는데,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기에 이르러서는 한결같이 명나라의 제도를 본받았으니 이에 문명과 문물이 찬연하게 빛나 늠름함이 삼대처럼 성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천하에서 중화의 옛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 더욱이 의복이란 몸을 꾸미는 것입니다. 공경(公卿), 사대부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등위가 있으니, 평상복이라 하여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의상은 경솔하고 조급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경, 온 나라의 사대부와 서민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니게 한다면 어찌 위엄과 볼거리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또 나라의 빈부와 군사의 강약은 의복제도의 변경과는 관계없다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도 아는 것인데, 전하의 신성한 예감으로 어찌 이를 모르시겠습니까?

23) 앞의 책, 고종 21年 閏5月 29日.

라고 하며 국왕에게 지시철회를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왕은,

제작년의 난리(=임오군란)로부터 2주년을 맞이하여 어찌 차마 할 말이 있겠는가. 폐단에 젖을 대로 젖고 규율이 해이해져서 만고에 없던 사태가 나타났다. 그러니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쳐 문란한 제도를 신속하게 잘 정돈하고 새롭게 바뀌가며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民)을 인도하는 데서 불만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주 시급한 일이다. 이번엔 의복제도를 변통하는 것은 바로 새롭게 변경하는 조치 중의 하나다. 이전에 내린 비답에서 나의 속마음을 남김없이 모두 간절하게 털어놓았는데 경들이 이처럼 강경하게 맞서고 있으니 너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나라의 근본이 되는 원로로서 대소사에 상관없이 백성(民)에게 편리한 것을 찾아서 이 일을 제때에 미처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나를 보좌하는 도리일 텐데 지금은 그리 하지 않으니 내가 어찌 경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명을 내린지 이미 오래고 차자에 대한 비답도 여러 번 내렸으니 경들도 직분과 의리, 체면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밀어붙였다.<sup>24)</sup> 열흘에 한 번 씩 간행되던 「한성순보」가 의제 개혁에 대한 공방을 처음으로 기사화하여 소개한 것도 바로 이날이었다.<sup>25)</sup>

이틀 후 예조에서 의복을 개혁하는 데 대한 세칙을 정하여 보고하자,

24) 앞의 책, 고종 21年 6月 1日.

25) 「漢城旬報」 음력 1884년 6월 1일자.

국왕은 이를 시급히 전국에 알려 보름 내에 실시하도록 지시를 내린다.<sup>26)</sup> 그러자 이번에는 봉조하 이유원이 상소를 올려 문물제도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못함을 ‘역사적 선례’들을 길게 열거하며 언급하고, 조선의 의복 제도가 모두 ‘성현들의 논의인 경전’에 의거하여 만든 것으로서 이를 고치게 되면 ‘귀천(貴賤)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성현들의 은덕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국왕을 비판했다.<sup>27)</sup>

영의정 김병국(1825~1905)은 사임을 요청했고, 영중추부사 홍순목과 우의정 김병덕이 강경하게 항의하였다.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도 이어졌다.<sup>28)</sup> 그리고 예조판서 이인명은 상소를 올려,

신이 만약 조금이라도 직무를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왕법이 더없이 엄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비록 도끼가 앞에 있고 칼과 톱이 뒤에 있더라도 확고하게 고집하여 죽더라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찌 우리 성상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시게 했겠습니까. 나라의 체통과 신하의 절의가 남김없이 무너졌으니, 첫째도 신의 죄요, 둘째도 신의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역지로 할 수 없는 일을 재촉한 국왕의 강경한 지시를 불가피하게 따른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 동요됨 없이 법을 지켜야 하는 신하된 자의 도리를 어긴 것이라고 하며 자기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왔다. 이에 국왕은 ‘예조판서가 올린 상소 내용이 얼마 전 자신의

26) 『승정원일기』, 고종 21年 6月 3日.

27) 앞의 책, 고종 21年 6月 3日.

28) 앞의 책, 고종 21年 6月 4日, 5日.

지시에 따라 지침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 신하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마음대로 규정함으로써, 신하로서의 직분과 의리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격분하면서 예조판서 이인명을 귀양 보내도록 지시를 내린다. 다만 이날부터 의복제도를 간편하게 고치는 것을 찬성하는 상소도 많지는 않지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주목된다.<sup>29)</sup>

한편 황현이나 정교가 이에 관해 남긴 기록은 매우 짧고 단편적이지만 당시 조정 정계의 분위기와 아울러 의제 개혁을 바라보던 민간에 회자되던 정서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그들(=전현직대신)이 전후로 올린 연명차지는 모두 우의정 김병덕이 주관하였다. 그는 답사의 내용을 부드럽게 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가 임금과 등대(登對)한 후에는 강경하게 저항하여 “전하가 이렇게 마음을 고치지 않으시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고종은 몹시 노하여 그를 꾸짖었다. 그 꾸짖는 소리가 전내(殿內)를 진동하므로 군신들은 얼굴빛이 변하였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전하께서 신을 죽이시려면 그뿐이지만 어찌 객기를 부려 옥체를 손상하십니까?”라고 한 후 빠른 걸음걸이로 대궐을 나와 그 즉시 동소문 밖에서 열흘 남짓 치죄할 길 기다렸다. 그러나 고종은 아직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 그를 향리로 축출하라는 교지(教旨)를 내리고, 영원히 그를 서용하지 않았다. [...] 그 후 김병덕은 영평 향제로 돌아가 다시 한성을 오지 않았다. 그는 청렴하여 칭찬할 만하지만 역량이 모자라는 데다가 풍절(風節)이 없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들은 그를 보잘것없이 여겼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군중의 여

---

29) 이에 관해서는 [표 6-1]을 참조할 것.

론이 완만하게 기울어져 그를 명재상이라고 하였다.<sup>30)</sup>

관복은 오로지 흑단령(黑團領), 오사모(烏紗帽)를 사용토록 했다. 한결같이 조선 건국 초에 제정한 양식을 따른 것이다. 사복(私服)은 단지 착수의(窄袖衣), 전복(戰服), 사대(絲帶)를 입도록 하여 간편함을 따를 것을 분명한 규정으로 만들었다. 이에 공복과 사복 가운데 소매가 넓은 옷은 모두 폐지되었다. 전 의정(議政) 김병덕이 상소하여 간언하였으나 임금의 들어주질 않았다. 이보다 앞서 김병덕이 궁궐에 들어가 뵈고 임금에게 아뢰기를 “정치가 이와 같으면 나라가 틀림없이 망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화를 내며 이르기를 “임오년 변란 때 단 한 명의 대신도 내 곁에 없었다”하자, 대답하기를, “이는 덕을 잃은 결과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이르러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가서 다시는 서울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장하게 여겼다.<sup>31)</sup>

정치적 입장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벼슬을 박차고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행위가 존중되던 조선의 정치적 풍토 속에서 민간의 여론이 조정에서 벌어지는 의제 개혁 논쟁에 대해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에 나온 [표 6-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왕은 신하들의 저항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정에 나오지 않는 영의정에게 ‘지금은 서로 버티며 헛되게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므로, 조정에 나와 부덕한 임금을 도와 국정에 임하라’는 설득을 계속해서

30) 황현, 앞의 책, pp.153~155.

31) 정교 저, 변주승 역, 『대한계년사』 권1(서울: 소명출판, 2004), pp.111~112.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있었다.<sup>32)</sup> 그리고 이번에는 세계의 대세가 변화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실사구시’적 태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서(1884년 6월 15일)를 내린다.

실질을 중시하고 여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급선무다. 우리 왕조가 태평한 지 오래되어 모든 일이 편안하다 보니 안으로 궁중 관청에서부터 밖으로 감영이나 병영, 고을과 진영(鎭營)에 이르기까지 조정의 명령을 선포하고 백성(民)을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임시방편으로 일을 때우고 옛 문서를 베껴서 전달하거나 실속 없는 빈 문서들만 갖추어 놓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법률과 규율이 정밀하게 갖춰지지 못하고 인제나 병제가 점점 시세에 맞지 않게 되고 말아 좀처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망이 없으니 어찌 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재 시국이 날로 변하고, 사무가 날로 늘어나며, 배와 수레로 교섭하는 길이 열리고, 감영과 보루에 군사훈련장을 설치하여 대응하는 것이, 결코 이전 날에 자기만을 지키려하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상투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쓸데없는 절차를 행하면서, 실사구시의 길을 탐구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실(實)이라는 것은 진실된 것으로 허망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간사한 것을 막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조치를 취하고 일을 하는 데에 간사하고 허망한 것이 섞여들면 어떻게 결연히 펼쳐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옛날의 어진 임금과 명철한 군주들이 정사를 볼 때 방법과 계획의 대강령이며, 또한 (상황에 따라) 새롭게 맞추어 나가려는 뜻이다. 묘당(=의정부)에서는 이 뜻을 잘

32) 앞의 책, 고종 21년 6월 7日, 9日, 12日, 14日, 17日.

헤아려서 문구를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공문을 내려 보냄으로써 꼭 실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일은 아직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대신들과 주요 관직자들이 계속 정무에 임하지 않고 버티는 날이 길어지면서 모든 국정이 지체되고 마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음이 관찬자료에 항목별로 조목조목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날 판중추부사 송근수(1818~1902)가 국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고,<sup>33)</sup> 얼마 후 조정에 나온 영의정 김병국은 ‘국왕이 위기상황에서 국정을 혼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이 의혹을 가지게 되고 온 나라가 소란스럽게 된 것도 바로 공론을 중시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는 비판을 늘어놓았다. 홍문관의 연명차자가 다시 나타났고,<sup>34)</sup> 송시열의 9대손에 해당하는 재야의 거물인 찬선 송병선(1836~1905)은 상소를 올려 ‘온 세상이 이적의 복장을 하고 있고 소국인 조선만이 오로지 문명의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겨우 보존해 오던 것조차 폐기시킨다면 하늘의 이치와 백성(民)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5)</sup> 이와 같은 상소는 계속하여 이어졌다.<sup>36)</sup> 그중에서도 예컨대 송근수가 재차 올린 상소는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3) 앞의 책, 고종 21年 6月 15日.

34) 앞의 책, 고종 21年 6月 23日.

35) 앞의 책, 고종 21年 6月 25日.

36) 앞의 책, 고종 21年 6月 30日, 7月 3日, 9日, 22日, 24日, 27日.

이번의 사복제도 변동절목은 일반적인 제도의 변동에 비할 것이 아니며 그 관계되는 바가 실상 중국과 오랑캐를 가르는 경계가 되는 것인데 우리 전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 이렇게 하게 되면 의복제도의 경우를 선례로 삼아 내일은 또 어떠한 변경을 도모하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근년에 와서 금수 같은 사나운 발자취가 나라 안에 나타나서 이미 큰 근심거리로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비상한 제도를 내오게 되었으니 듣고 보는 사람들이 어찌 놀라고 의혹을 갖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누구나 답답하고 통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 앞에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가장 높은 관리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엄한 형벌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자기주장을 펴겠습니까.

옛날 조나라 무령왕이 기병의 힘을 빌리기 위하여 오랑캐의 복장을 제정하였다가 세상만대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전하도 역사를 읽을 때면 늘 이에 대하여 통탄하였는데 지금 시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세운다고 하는 의논이 어찌 조나라 사람의 술법과 다르겠습니까. 맹자는 말하기를, '나는 중국의 제도로써 오랑캐의 제도를 변경시켰다는 말은 들었어도 오랑캐에 의해서 중국의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비로소 큰 나라의 교화를 받아 차츰 문명한 지역으로 되었으니 우리 전하가 잘 계승 발전시켜서 억만 년 무궁할 계책을 남겨놓는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잘 생각하셔서 이미 내린 지시로 도로 철회하여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sup>37)</sup>

---

37) 앞의 책, 고종 21年 7月 3日.

국왕은 이러한 비판자들의 상소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앞의 [표 6-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비판자들을 처벌하기보다는 점차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대체로 지나간 일은 마치 구름이 흩어지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말끔히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군신 간, 상하 간은 서로 믿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처지에 있는데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sup>38)</sup>

변통한 것은 바로 옛것을 끌어오고 오늘의 것을 참작하여 번잡한 것을 제거하고 간편한 것을 취한데 불과하다. 이미 절목에 대하여 공문을 띄웠으니 너는 양해할 것이다. (상소에서 언급한) 백성(民)을 인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감화시켜 성취하게 하는 것은 의복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문을 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너는 분명히 조정에 나와 아침저녁으로 곁에서 품고 있는 유익한 말을 하여 임금과 백성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나는 이에 대해 몹시 기대하고 있다.<sup>39)</sup>

이후 의복제도 개혁에 관한 비판은 조금씩 수그러드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황현의 표현을 빌면, “임금과 신하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며 조정이 소란하였으나 점차 서로 양보하여 그 제도를 조정과 민간에게 반포”하게 된 것이다.<sup>40)</sup> 이처럼 의복개혁을 둘러싸고 두 달 이상 지루하게 진행된

---

38) 앞의 책, 고종 21年 7月 16日.

39) 앞의 책, 고종 21年 7月 22日

40) 황현, 앞의 책, p.154.

정치적 줄다리기의 내용만을 보면 분명 국왕은 조선의 협소한 정치공간에서 매우 고전하였으나 개혁안을 끝까지 밀어붙임으로써 힘겹게나마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 4. 의제 개혁의 주체와 국왕의 역할

의제 개혁의 정치적 공방을 당대의 정치적 맥락위에서 정밀하게 독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의복에 대한 조선인의 자부심이 확고부동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의제 개혁이 현실정치 공간에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일까? 즉, 조선 정계에서 의제 개혁의 추진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의제 개혁의 추진 주체를 직접 언급한 자료로는 『윤치호일기』, 『청계증일한관계사료』, 황현의 『매천야록』과 『오하기문』 등이 있다. 따라서 여기 실린 내용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하자. 『윤치호일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날 들으니 영을 내려 조관은 늘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흉배(胸背)를 붙여 등급과 문무의 구별을 표시하고 벼슬이 있는 자는 늘 쾌자(快子)를 입고 사대(絲帶)를 띠고, 창의(斿衣), 중추막(中秋幕), 도포(道袍), 직령(直領)을 일체 폐지했다고 한다. 이는 운태(=민영익)가 헌책한 것이다.<sup>41)</sup>

41) 윤치호 저, 송병기 역, 『국역 윤치호일기』 1권, 1884년 윤 5월 26일, 양력 7월 18일자(서울: 연세대출판부, 2001), pp.149~150.

당시 윤치호가 미국공사의 통역으로 국왕의 근거리에서 조정의 상황을 접하고 있었음을 고려해볼 때 그의 기록이 갖는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계중일한관계사료』에서도 민영익의 건의가 의제 개혁의 성립배경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1823~1901)은 6월 3일자 “사복제도변통절목”과 함께 다음 내용을 자국 황실에 보고하고 있다.

조선이 서양국가와 외교를 수립한 이후 의복 개정에 관한 논의가 부단히 제기되었습니다. 얼마전 민영익이 미국에 출사한 후, 영국과 프랑스를 거쳐 귀국한 뒤 의복 개정에 관해 결사적으로 주장을 하여 6월 3일 조선국왕이 정식으로 교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여기 그 개정내용을 초록하여 첨부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에 옛 제도를 바꾸려하니 조정관원들 대다수가 이를 원하지 않았으나 단지 외서(外署) 관원들만 이를 반겨 지지하였는데, 특히 좌우의정 김병국과 홍순목 등의 사람들은 극력 반대하였습니다.<sup>42)</sup>

즉 보병사의 임무를 띠고 미국, 유럽 등지를 보고 5월에 돌아온 민영익(1860~1914)이 국왕에게 건의를 해서 의제 개혁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황현의 『매천야록』은 이와 관련하여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박영효 등은 서양의 제도를 미칠 듯이 좋아하여 임금에게 의제 개혁을 권고

---

42)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會 編, 『淸季中日韓關係史料』(臺北: 1972), 「朝鮮國王更定臣民冠服敕諭」, 0876, 光緒 10年 6月 26日(1884.8.16), pp.1468~1469; 김성남, “『申報』를 통해 본 1880년대의 조선 사회”,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삼국과 한국: 근대인식과 정책』(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p.54에서 재인용.

하면서, “모두 간편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강책의 첫째입니다.”라고 하였고, 민영익도 청나라에서 돌아와 그와 같은 여론을 전개하였다.<sup>43)</sup>

이에 따르면, 의제 개혁은 박영효(1861~1939) 등이 평소에 건의해 온 것이고 민영익은 보빙사로 귀국한 후에 이러한 논의에 합세함으로써 의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최근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1882년 일본에 파견된 3차 수신사 박영효가 일본에서 단발에 양복을 착용한 채 찍은 사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을 고려하거나,<sup>44)</sup> 혹은 김옥균(1851~1894)의 「한성순보(漢城旬報)」 1884년 윤5월 11일자에 실려 있는 “치도론(治道論)”의 다음 내용을 고려해 보더라도 설득력을 갖는다.

어떻게 무관직을 정비하느냐. [……] 포복(袍服), 화정(靴頂) 등 몸에 걸치는 장신구와 곤상(袞裳)을 버리고 수족을 민첩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용복(戎服)을 간편하게 하여야 한다.<sup>45)</sup>

그런데 황현의 다른 책 『오하기문』은 의제 개혁과 관련해서 『매천야록』과는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는 이 문제를 보는 또 다른 측면을

---

43) 황현, 앞의 책, p. 153. 다만 여기서 민영익이 청나라에서 돌아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민영익은 보빙사를 이끌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유람하고 돌아왔다. 보빙사에 관해서는, 김원모, 『韓美修交史: 朝鮮僱聘使의 美國使行篇(1883)』(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을 참고할 수 있다.

44) 이경미, “갑신 의제 개혁 이전 일본 파견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의 복식 및 복식관”, 『한국의류학회지』 Vol.33, No.1(2009), pp. 50~52.

45) 「漢城旬報」 1884년 윤 5월 11일자, 『漢城旬報, 漢城周報 翻譯版』(서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3), p. 508.

볼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갑신년 봄에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미국에서 돌아왔다. 민영익은 널리 천하를 두루 돌아보고는 우리나라가 사소한 것에 매달려 원칙만 고집하여 끝내 부강해질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무령왕(武寧王)의 일을 흠모하였다. 그는 밤낮없이 임금께 양복으로 바뀌 입을 것을 권하였는데, 임금이 그것을 지지하여 여름에 세척을 반복하여 소매가 넓은 것과 끈을 길게 드리우는 제도는 모두 없애고, 다만 소매가 짧은 옷을 입는 데 관직에 있는 사람은 전복(戰服)을 껴입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려 시행하였다. 이에 조정의 대신과 대간뿐 아니라, 밖으로 산림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소를 올려 그 부당함을 힘써 간하였다. [……] 이 무렵 김옥균, 박영효 등은 서양과 왕래하면서 그 부강함을 헛되이 흠모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가 작고 보잘것없다며 서로 이를 비난하더니 마침내 역모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에 민영익을 건드려 먼저 의복제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떠보았다.<sup>46)</sup>

황현의 기록을 통해 상황을 종합하면, 보병사의 임무를 띠고 미국, 유럽 등지를 5월에 보고 돌아온 민영익이 국왕에게 건의를 한 것이 의재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는데, 그 배후에는 서양의 부국강병을 흠모하여 전면적인 개혁을 도모하고자 했던 김옥균과 박영효 등의 은밀한 부추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개화파의 기록이 아닌 다른 관찰자

46) 황현, 김종익 역, 『오하기문』(서울: 역사비평사, 1994), pp.39~40. 황현의 『매천야록』이 정리된 저술이라면, 그의 『오하기문』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정리한 초고의 성격이 강하다(앞의 책의 해설 부분 p.5 참조). 앞서 언급한 대로 동일 저자의 다른 두 책에서 같은 사건을 다르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두 책의 성격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기록만으로 의제 개혁의 주체를 밝혀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모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의제 개혁의 진행 과정이 진행된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기록하고 있는 『승정원일기』 등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의제 개혁안에 저항하며 전국에서 올라오는 모든 상소를 비롯하여 이를 행동으로 저지하려는 정치세력들을 현실정치 공간에서 직접 상대한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나 [표 6-1]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민영익이나 박영효, 김옥균 등이 아니라 국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제 개혁의 추진 전후에 개화세력이 관여하고 있었던 「한성순보」에 수록된 기사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조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제 개혁 공방을 전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사례 등을 통해 의복개혁의 정당성을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sup>47)</sup> 그렇게 보면 민영익이나 박영효, 김옥균 등은 개혁을 진행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정치 공간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국왕 고종을 뒤에서 도운 보좌역에 가깝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면 고종의 의제 개혁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고종의 복식관을 보여주는 자료와 고종의 정치의식과 대외인식의 변화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보자. 여기서 상기시켜두고 싶은 사실은 당시 조선의 폐쇄적인 정치적 사상적 여건하에서

---

47) 의제 개혁이 진행되던 시기 동안의 「한성순보」를 보면 의제 개혁 공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6월 1일, 11일, 21일, 7월 1일, 11일까지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7월 22일부터는 의제 개혁과 관련된 상소 내용을 더 이상 기사화하지 말라는 국왕의 특별 지시를 따로 소개하며 기사화하지 않게 된다.

비교적 풍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거의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다름 아닌 국왕이었다는 점이다. 이미 다른 연구를 통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어린 시절 고종은 서양세계를 전통적인 화이(華夷)관념에 근거해 자기가 속한 문명세계와는 상극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sup>48)</sup> 국왕의 의복에 대한 인식 역시 당시의 전통적인 복식관과 동일한 것이었음은 1873년 김세균과의 경연에서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종: 우리나라의 복식은 모두 명의 옛 제도를 따른 것이다.

김세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이 명의 제도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  
오늘날 명의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에만 있을 뿐입니다.<sup>49)</sup>

그런데 국내외의 각종 사건과 외국으로부터의 정보에 접하게 되면서 국왕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외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이에 근거해 조선의 현실을 반추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예컨대 국왕의 대외적인 관심이 한창 고조되어 가기 시작할 무렵, 연행사절의 귀국보고 장면을 살펴보면, 복식에 대한 고종의 관심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873년 연행사절 귀국보고 장면이다.

고종: 왜인 수십여 명이 황성(皇城=북경)에 와 있으면서 작년에는 복장이 아직 섬나라 복장을 유지한다고 하더니만 지금은 양이(洋夷)의 모양을 본

48) 청년기 고종의 대외인식의 전환에 관해서는, 강상규, 앞의 책, 4장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49) 『승정원일기』 고종 10年 5月 16日.

받은 자가 많다고 하니 이는 양이들의 유혹에 이끌려 그들 본래의 복장을 바꾼 것인가?

정사 이근필: 과연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서양의 제도를 따르고자 한다 하니, 반드시 내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사 한경원: 왜놈들은 과연 서양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

서장관 조우희: 이른바 왜주(倭主=천황)란 자가 양이와 부화뇌동하여 경전을 비난하고 오로지 사교(邪教)를 숭상하며, 심지어 의복제도까지 모두 서양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

고종: 왜에는 지금 관백(關白)이 없으니 양이와 왜의 통교는 곧 왜주가 하는 것인가?

이근필: 왜주가 양이를 불러들여 그 힘을 빌려 관백을 제거한 다음 스스로 국정을 총괄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텅 빈 산에서 혼자 호랑이를 끌어들여 자신을 호위하는 격입니다.

한경원: 이제는 양이(洋夷)와 왜(倭)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종: 서양 여러 나라 사람들이 중국 황제를 알현할 때의 복장은 어떠한가?

이근필: 각자 자기나라 복장을 하고 조회 및 알현하였습니다.

한경원: 처음에는 중국의 복장으로 인견(引見)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섬나라 무리배들이 끝까지 따르지 않고 섬나라 복장으로 나가서 알현하였다고 합니다.<sup>50)</sup>

위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복식이 서구식으로 개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국왕이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음을 알

50) 『승정원일기』 고종 10年 8月 13日.

수 있다. 이후 일본과의 관계에서 복장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었고, 서구식 의복 착용이야말로 일본과 서양 오랑캐가 하나라는 증거라는 논의가 조야에서 계속 제기되던 상황에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면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모색하려고 했던 국왕에게 의복제도의 문제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김홍집의 귀국보고 자리에서 “저들이 비록 우리나라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자고 하지만 이를 어찌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곧 우리도 또한 부강지술(富強之術)을 시행하는 것이 요구될 따름이다”라고 하면서 결의에 찬 입장을 보이던 국왕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꿔 “왜주(=일본 천황)가 과연 양복을 입었던가?”<sup>51)</sup>라는 질문을 던진 것도 이러한 이유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유학적 가치관과 문명 의식을 견지하고 있던 조선의 군주로서 조선의 문명 의식을 표상하는 의복 제도를 변통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없었다. 조사시찰 단으로 일본의 내무성 시찰을 담당하고 귀국한 박정양(1841~1904)과의 대면 장면은 이러한 정황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고종: 일본의 세력이 어떠한가?

박정양: 일본의 외형을 보면 대단히 부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땅이 넓지 않은 것도 아니며 군대가 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건물과 기계도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은 그렇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서양과 통교한 후로는 단지 교묘한 것을 따를 줄만 알아서 [……] 오로지 서

51) “수신사입사연설”, 송병기 편역, 『대미수교관련 수신사 기록초 개방과 예측』(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pp.95~96.

양의 제도를 좇으려다 보니 위로는 정법(政法)과 풍속으로부터 아래로는 의복과 음식에 이르기까지 이제 변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고종: 저들이 타국의 법이 좋아져서 다분 절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복까지도 그런 식으로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저들이 잃은 바일 것이다.<sup>52)</sup>

이 무렵 국왕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와 동급기구로서 청과 일본 모델을 절충하여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는가 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양열강과 조약체결을 추진하는 등 개혁 개방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가던 상황이었다.<sup>53)</sup> 이러한 상황에서 임오군란이라는, 대원군세력과 전통주의자들의 물리적인 저항에 부딪히며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동안의 모든 개혁 추진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는 듯하였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상황이 극적으로 진정되면서 다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와중에서 1882년 8월 5일 국왕이 내린 유명한 교서에는 달라진 시대 흐름 위에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정황과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1884년 윤 5월에 국왕이 의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새로운 시대흐름을 감지하고 부국강병의 길을 도모하면서 의제 개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던 국왕이라는 존재와 그를 측근에서 보좌하면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의제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옥균,

52) 『승정원일기』 고종 18년 8월 30日條; “東萊暗行御史入侍時 筵說”, 『박정양전집』 4권(아세아문화사, 1984), p.332.

53) 이에 관해서는, 강상규, 앞의 책, 3장과 4장 참조.

박영효 등의 노력, 그리고 국왕의 또 다른 측근으로 보빙사의 자격으로 구미열강의 실정을 보고 돌아온 민영익의 주장 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요소들이 맞물려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5. 맺음말에 대신하여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힘겹게 진행된 의제 개혁의 결과는 어렵게나마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그렇게 보인 것에 불과했다. 얼마 후에 갑신정변이 발생하여 '삼일천하'로 끝나게 되면서 그동안 개혁의 성과가 거의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중국 측 언론의 기사내용을 살펴보자.

작년 여름에 의복제도의 개혁 명령이 내려졌으나 겨울에 다시 구제도로 돌아갔다. 현재는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옷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 이리하다.<sup>54)</sup>

조선의 난(=갑신정변)이 평정된 후에 다시 옛 의복제도로 회복하라는 명이 내려졌다.<sup>55)</sup>

그리고 보면 국왕의 의제 개혁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보좌역할을 담당하던 개화세력이 일으킨 갑신정변이 역설적이게도 결과적으로는 의제 개혁을 실패하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6)</sup> 결국

54) 「申報」, 「三韓叢話」(1885.1.20), 김성남, 앞의 논문, p.55에서 재인용.

55) 「申報」, 「朝鮮經變紀錄」(1885.2.11), 김성남, 앞의 논문, p.48에서 재인용.

의복개혁은 1895년 갑오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하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 최익현이 ‘역적을 토벌하고 의제를 원상으로 복귀시킬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19세기 조선의 정치세력들의 끊임없는 엇박자를 대면하게 되는 것 같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다.

신이 살피건대, 한갓 오랑캐 풍속으로 중화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금수로 타락시키는 것으로 농사를 삼으면서 이르기를 ‘개화’라고 하니, 이 개화란 두 글자는 용이하게 남의 나라를 망치고 남의 집안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 의관을 무너뜨리고 오랑캐로 타락하면서 억지로 문명이라 칭하고, 혹 부유하고 강하게 한다 자칭하면서 군제를 없애고 나라 형세를 날로 약화시킵니다. 지금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으나, 오직 의복제도를 변경하는 한 가지 일은 더욱 그 의리를 해침이 심하여 시급하게 먼저 복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체로 의복이란, 선왕들께서 오랑캐와 중화를 분별하고 귀천을 나타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복제도가 비록 다 옛 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화문물이 보존된 바이며 우리나라 풍속을 볼 수 있는 바로서 선왕들께서나 선대의 성현들이 일찍이 강론하여 밝혀 준수해 온 것이며, 천하의 만국들이 일찍이 우러러 사모하며 찬탄해 온 것입니다. [……] 이것을 버린다면 요순문무가 서로 전승해 온 중화의 한 줄기를 찾을 수가 없게 되고, 기자(箕子) 및 우리 조종들이 중화의 풍속을 가져다가 오랑캐를 변화시킨 훌륭한 덕과 큰 공로를 또한 천하의 후세에 밝힐

---

56) 이번 연구를 마감하며 갑신의회 개혁과 갑신정변은 결국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논문을 통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어찌 차마 할 수 있으리까?

지난 갑신년에 전하께서 일찍이 소매가 좁은 옷 제도를 만드셨다가 곧 잘못 입을 깨닫고 폐지하시매, 상하 민중들이, 대성(大聖=국왕)께서 개과천선 하시는 도량이 보통사람과 비교 안 될 정도로 만만 배라고 우러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이제라도 시급히 덕음을 널리 내리시어 검은 의복을 엄금하여 옛 제도를 복구하도록 하고, 모든 여러 법도나 정령이 이적과 금수의 풍속에 가까운 것은 모두 차례차례 폐지하여 없애되, 한시도 지체됨이 없도록 하소서.<sup>57)</sup>

동아시아의 19세기는 흔히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라고 일컬어진다. 이 시기는 중화질서, 혹은 천하질서 등으로 불리던 동양 문명이 막강한 물리력을 앞세운 서양 제국과 마주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기왕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외래로부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면적으로 조우해야 했다는 점에서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부를 만한 ‘거대한 전환’의 시기였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던 표현을 빌면, ‘숫불과 얼음’의 관계라고 부를 만한 서로 다른 패러다임들이 격렬하게 만났던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가 이 시기를 “마치 뜨거운 불과 차디찬 물이 만나는 것과 같고”, “한 몸으로 두 인생을 겪는 것과 같으며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신체가 있는 것과 같은” 충격과 위기의 시대라고 부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sup>58)</sup>

57) 최익현, “請討逆復衣制疏”, 앞의 책, p.140.

58) 福澤諭吉, “緒言”, 『文明論之概略』(東京: 岩波文庫, 1995), pp.10~12.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의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의제 개혁을 둘러싼 격렬한 논란 과정은 ‘문명의 충돌이란 실상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확연하게 해준다.<sup>59)</sup> 뿐만 아니라 거대한 전환기의 상황하에서 상소 등을 통해 나타난 위기의식의 내용도 민족주의에 익숙한 오늘날의 입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국왕의 의제 개혁을 반대 혹은 구속하는 핵심적인 논거는 철저하게 중화문명권의 고유한 ‘문명기준’에 입각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국왕의 의제 개혁 지시에 대한 모든 비판과 견제 논리에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행위가 나라의 근본인 민(백성)의 의혹을 사는 행위이거나, 역사적인 시간 축위에서 형성된 문명의 축적을 거슬러서는 안 되며, 그것을 표상하는 중화문명의 제도나 예적인 질서의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자기암시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상소에 어디에나 강하게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제 개혁에 대한 비판과 반대논리가 기본적으로 ‘경전’과 ‘역사’ 그리고 ‘예적 권위’라는 세 개의 좌표축 위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의제 개혁이 하필 그토록 격렬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데에는 명칭교체라는 문명질서의 전복이 이루어진 이후 조선이 일상 속에서 중화문명의 정수(精髓)를 유일하게 계승하고 있으며 조선이 문명국가임을 가장 명증하게 보여주는 근간이 바로 다름 아닌 조선의 의관문물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제 개혁의 문제는

59) “문명은 문명의 차원에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납니다.” 함재봉, “David Hall 교수와의 대화: 동서문화의 상호이해는 가능하다”, 『전통과 현대』 3호(겨울, 1997), p.237.

거대한 혼돈의 시점에서 조선의 정체성과 신분질서를 뒤흔드는 문제라는 강렬한 위기의식으로 이어져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확고히 믿어 왔던 ‘문명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은 패러다임이 극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유한 문명기준’이 오히려 ‘야만’과 ‘정체(停滯)’됨의 표상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보면, ‘문명 기준의 역전’이라고 불러야 할 사태의 전개였고, 이러한 거대한 전환기의 와중에서 나타난 조선 정치세력들의 끊임없는 엇박자로 조선의 운명은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

논문 접수일 2009.12.28.

심사 완료일 2010.01.27.